

가천대학교인증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행세칙을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교 총장 명의로 발행되는 인증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제”는 학생들이 재학 중에 박애, 봉사, 애국 등의 교육이념을 실천하여 학교가 요구하는 자격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를 학교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증기관”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증제를 운영하는 본교 직제규정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인증영역”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한 영역을 말한다.
4. “인증기준”은 인증영역을 달성하기 위해 기준을 말한다.
5. “인증서”라 함은 인증기관이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6.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함은 인증신청, 접수, 평가, 인증서 발급, 민원처리, 인증통계, 인증기관 관리 등 인증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인증 대상) ①인증 대상은 본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②인증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기간 내에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영역 및 인증기준) ①인증제의 인증영역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증기관이 정할 수 있으며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세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인증영역의 인증기준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세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인증서 등급 및 기준) 인증서 등급과 기준은 인정영역에 따라 총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세칙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

2-1-18~2 제2편 학 칙

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